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

의안 번호	23-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1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마포구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(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)

나.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·이행(안 제3조~제4조)

다.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, 지속가능발전 보고서(안 제6조~제7조)

라.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(안 제8조~제12조)

## 4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2. 12. 29. ~ 2023. 1. 18.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해당 없음
- 3) 새마포담당관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: 원안 동의
- 4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5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청장의 책무)**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지속가능발전이 구정운영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,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3조(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·이행)**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(이하 “기본전략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전망
2.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 및 기본정책 방향

3.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등에 관한 사항

4.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

5.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

③ 구청장은 구의 경제적·사회적·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재정비하여야 한다.

1. 국가기본전략

2.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

3.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

④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1.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

2.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

3. 상위법령의 제정·개정·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

**제4조(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·이행)**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(이하 “추진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1. 추진계획의 추진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

2.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

3. 상위법령의 제정·개정·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

**제5조(조례 제·개정에 따른 통보 등)**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·개정하려는 때에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·장기 행정계획을 수립·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의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·장기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
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·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·변경에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,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)** ① 구청장은 구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.

②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지속가능발전 보고서)** 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년마다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·공표하여야 한다.

②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
2. 구정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
3.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

**제8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** ① 구청장은 구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·자문한다.

1.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 제20조 제2항에 따른 사항
2.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에 관한 사항
3. 주요 구정의 지속가능성 검토 및 평가
4.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

**제9조(위원회 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각 국·소장으로 한다.

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.

1. 교육, 보건복지, 경제, 환경, 문화예술, 행정 등 각 분야의 전문가
2. 시민단체, 기업 또는 각 기관·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
3.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추진 역량을 가진 사람

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·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

자동 해산한 것으로 본다.

**제10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** ① 위원 중 심의·자문할 안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전에 대하여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② 위원장은 위원 중 일부 안전에 대해 공정한 심의·자문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당 안전의 심의·자문에서 배제한다.

③ 위원이 심의·자문할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·자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.

**제11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12조(회의 및 운영)**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안전을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④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소관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둘 수 있다.

**제13조(의견청취)** 위원회는 안전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 관련 부서의 장, 소속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주

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**제14조(경비의 지원)**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과 간담회 개최 및 위원회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5조(운영세칙)**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**제16조(조사·연구의 의뢰)**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,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및 평가,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민단체 및 연구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·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조사·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7조(교육·홍보 등)**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위원회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과 간담회 개최 및 위원회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등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 제2항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

4. 작성자 : 새마포담당관 여수진 (☎ 3153-8073)